일반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갑) : ⊙ 사 업 장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 상 호 : 선우FS
⊙ 대 표 : 추수현 (이하 "갑" 이라 칭한다.)

(을) : ⊙ 사 업 장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 상 호 : 선우FS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추수현 (이하 "을" 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소재 선우FS (이하 "회사라 칭함)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 (양도양수·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13년 11월 1일 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
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정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종업원의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하면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 (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기 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계약내용을 "갑" ,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3년 10월 29일

(갑) :
⊙ 사 업 장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 상 호 : 선우FS
⊙ 대 표 : 추수현 印

(을) :
⊙ 사 업 장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3
⊙ 상 호 : 선우FS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추수현 印